

# 한국감정원 신입직원(채용형인턴) 채용 공고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한국감정원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능력중심 채용으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분 야		채용예정인원	직무기술서
종합직	일반	건축	일반	2명	직무설명자료
			이전지역인재	2명	
	전문	감정평가사	일반	15명	직무설명자료
			이전지역인재	4명	
		변호사		2명	직무설명자료
		변리사		1명	직무설명자료
공인노무사(이전지역인재)		1명	직무설명자료		
일반직	보훈	시간선택제* (서무·회계)	이전지역인재	3명	직무설명자료
			서울근무	1명	
			충주근무	1명	
업무 지원직	보훈	서무보조	일반	2명	직무설명자료
			보훈특별고용**	2명	
합 계				36명	

\* 일반직 '시간선택제'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채용 후 전일제근무 전환은 불가능하며 경쟁을 통한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가능함

\*\* 보훈특별고용은 2019.9.26일자 대구지방보훈청 추천 인원내 한함

※ 분야별 직무는 별첨 NCS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 2. 채용형태

### ■ 신입직원 : 채용형인턴

- (종합직) 채용형인턴으로 집합연수 및 실무수습 후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종합직으로 채용 ※ 최소 70% 이상 전환
- (일반직(시간선택제)) 반일제 근무 형태(1일 4시간, 주5일 주당 20시간)이며 채용형인턴으로 집합연수 및 실무수습 후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일반직으로 채용 ※ 최소 70% 이상 전환
- (업무지원직) 채용형인턴으로 집합연수 및 실무수습 후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업무지원직으로 채용 ※ 최소 70% 이상 전환 (보훈특별고용 제외)

## 3. 지원자격

### ■ 공통사항

- 입사예정일(2019년 12월말 예정)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우리 원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이전지역인재 분야 : 이전지역(대구·경북)에 소재하는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대학 졸업예정자의 범위)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이전 지역인재 범위 관련 상세내용은 별첨 이전지역인재 범위 참조

## ■ 종합직(일반)

- (건축) 성별, 연령,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없음

## ■ 종합직(전문)

- (감정평가사)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19년 감정평가사 2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변호사) 공고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변리사) 공고일 기준 「변리사법」 제3조에 따라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이전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로서 공고일 기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 ■ 일반직(보훈)

- (시간선택제(서무회계))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보훈대상 제한경쟁)
  - ※ 성별, 연령, 학력 및 전공 등은 별도 지원자격 제한없음
  - (이전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별첨 이전지역인재 범위 참조)
  - (서울근무) 서울 근무 가능자
  - (충주근무) 충북 충주시 근무 가능자

## ■ 업무지원직(보훈)

- (서무보조)
  - (일반)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보훈대상 제한경쟁) ※ 성별, 연령, 학력 및 전공 등은 별도 지원자격 제한없음
  - (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로서 '19. 9. 26일자 대구지방보훈청 추천 대상자에 한함

## 4. 우대사항

###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중복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구 분	서 류	필 기	면 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만점의 3,5,10%	만점의 3,5,10%	만점의 3,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만점의5%	만점의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및 자녀)	만점의3%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만점의3%	-	-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점부여

### ■ 자격 관련 우대사항 ※ 중복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분 야	자 격	서 류	필 기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만점의 2%	-
건축	건축사, 관련분야 기술사 <sup>1)</sup>	만점의 10%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관련분야 기사 <sup>2)</sup>	만점의 3%	-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변호사	변호사	-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변리사	변리사	-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1) 관련분야 기술사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 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2) 관련분야 기사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기사(태양광), 실내건축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 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 자격 관련 우대는 해당분야 지원자에 한하며,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합격증 포함) 또는 등록증 소지자로서 최종합격자 결정일 까지 자격증(합격증 포함) 또는 등록증 소지가 유효하여야 함

## ■ 기타 우대사항

※ 중복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구 분		서 류	필 기	
지역인재 <sup>1)</sup>	이전지역인재(대구·경북)	만점의5%	-	
	비수도권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제외)	만점의3%	-	
인턴 <sup>2)</sup>	우리 원 대학생 인턴(장기현장실습(IPP) 포함) 수료자, 홍보대사	만점의10%	-	
사회복무요원 <sup>3)</sup>	우리 원 사회복무요원	만점의2%	-	
공모전 <sup>4)</sup> (특전부여 사전공지)	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15)	최우수상 우수논문	면제 면제	면제 -
	부동산 가격정보 앱 디자인 공모전('15)	대상,우수상	면제	-
		장려상	만점의3%	-
	학술지 부동산 분석 논문 공모전('15)	최우수상	면제	-
	부동산 정책 및 시장분석 논문 공모전('16)	최우수상	면제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15~'17)	우수상 이상	면제	-
	부동산산업 발전과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한 우수논문 경진대회('17)	수상자	만점의2%	-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17)	수상자	만점의2%	-
	2018년도 하반기 대국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19)	우수상,장려상	만점의5%	-
한국감정원 제3차 사회적가치 국민제안('19)	우수상,장려상	만점의5%	-	

- 1) 이전지역인재가 건축(일반), 감정평가사(일반), 시간선택제(서울근무), 시간선택제(충주근무)에 지원했을 경우 지역인재 가점(이전지역인재 가점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불인정
- 2) 2009년, 2010년 인턴의 경우 별도 공지된 우대사항 적용

인턴년도	가점대상	가점사항	비고
2009년	·우수인턴	서류전형 가점 (만점의10%)	• 대상자 : 9명
	·우수인턴 중 상위 20%	서류전형 가점 (만점의10%) 면접전형 가점 (만점의5%)	
2010년	·6개월 이상 근무 인턴	서류전형 가점 (만점의10%) 필기시험 면제	• 대상자 : 33명
	·우수인턴	서류전형 가점 (만점의10%) 필기시험 면제 면접전형 가점 (만점의10%)	

- 3) 복무당시 소속 실처지사장의 우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우대기간은 소집해제된 날로부터 2년까지만 적용
- 4) 사전에 공지된 특전 내용에 따라 우대사항 적용

## ■ 우대사항 적용

- 전형별로 상기 항목별(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 기타)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
  - ※ 단, 항목내에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하고, 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5% 이내에서 적용

## 5.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19. 9. 30.(월) ~ 2019. 10. 15.(화) 18:00까지

### ■ 접수방법

- 우리 원 홈페이지([www.kab.co.kr](http://www.kab.co.kr))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 \* 접수마감일은 지원자가 집중되어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지원 요망

### ■ 지원서 작성 시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 채용시험 가점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 \* 일반직(보훈), 업무지원직(보훈) 분야는 제출 필수
-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임을 증빙하는 증명서(부모의 출신 국적 표기) 사본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총괄) 인증서 사본 1부
- 직업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수료증에 한함
- 우대 자격증(합격증 포함)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 종합직(전문) 분야 :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합격증 포함) 또는 등록증 제출 필수
- 대학생 인턴(장기현장실습(IPP) 포함) 및 홍보대사 수료증 사본 1부
- 우리 원 공모전 등 수상 상장 사본 1부
- 우수 사회복지무요원 추천서 사본 1부

\*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지원자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기준

- 제출방법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관련 서류를 PDF 또는 JPG 형태로 첨부
- 성명, 생일을 제외한 인적사항(나이, 사진 등)을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격 확인, 가점부여를 위한 우대사항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
  - \* 제출서류 원본 또는 사본은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후 직접 제출

## 6. 전형방식

- ① 서류전형 → ② 필기시험 → ③ 면접전형 →  
④ 신체검사 → ⑤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대상 신용조회 및 신원조회 실시 예정

### ① 서류전형

-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100점 만점))
  - \* (예외) 업무지원직 보훈특별고용의 경우 적격심사만 실시
-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이내에서 결정
  - \* 우대사항에 따른 서류전형 면제자 포함
  - \* (예외) 업무지원직 보훈특별고용의 경우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처리)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② 필기시험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서울 예정)
- (필기구분) ①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②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 ③인성검사
  - ①직업기초능력평가 ③인성검사 : 모든 분야 시행
  - ②직무수행능력평가 : 종합직(일반) 건축 분야만 시행
  - \* 건축사, 관련분야 기술사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4. 우대사항 중 '자격 관련 우대사항' 참조)

※ 단,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중 분야별 해당되는 시험에 하나라도 미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 분야별 필기시험 대상 및 출제범위 >

구 분	대 상	출제범위
직업기초능력평가	모든 분야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직무수행능력평가	건축*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인성검사	모든 분야	인성 전반

\* 건축 분야 지원자 중 건축사, 관련분야 기술사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 (평가기준)

- 종합직(일반) 건축 분야 :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30:70 비율로 환산하여 평가

\* 자격 관련 우대사항으로 직무수행능력평가를 면제 받는 자(건축사, 관련분야 기술사)는 건축(일반), 건축(이전지역인재) 분야별로 최고 득점자와 동일 점수 처리

- 종합직(전문), 일반직, 업무지원직 :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100% 반영

○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 (동점자처리)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3 면접전형

○ (대 상) 필기시험 합격자

○ (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100점 만점)

직업기초능력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정보능력 ⑤조직이해능력
직무수행능력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결정  
※ 단, 6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시 다음의 순서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1순위	· 필기시험 점수
2순위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
3순위	· 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태도 → 발전가능성 → 창의성 → 필요기술 → 필요지식 순서별 고득점자

#### 4 신체검사

- (대 상) 면접전형 합격자
- (전형방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 결과 제출
  - \* 검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판정보류로 분류
- (판정보류) 판정보류자의 경우 별도 기한 내 “합격”판정서 제출
  - \* 재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

#### 5 최종합격자 결정

- 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
◆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신원조회·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성실복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소급 취소

### 7. 전형일정

연번	내 용	일 자
1	채용공고	9.30(월)
2	입사지원서 접수	9.30(월) ~ 10.15(화)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28(월)
4	필기시험	11.2(토)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1.5(화)
6	면접전형	11월 중순~11월 말
7	신체검사	11월 말~12월 초
8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12월 초~12월 중순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일정변경 등의 안내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kab.co.kr](http://www.kab.co.kr))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앱을 통해 공고

## 8.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결정 또는 채용을 취소함

### ■ 제출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

### ■ 제출시기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후 별도 기한 내

※ 제출서류 누락 시 최종합격자 발표 前일 정오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

### ■ 제출서류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기준

#### [공통]

- ①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 \*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 ②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각 1부
  -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③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해당자]

- ①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 이수내역 증빙자료 (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각 1부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 내역(학교교육, 직업교육) 포함 필수
- ② 자격증(합격증서 포함)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 \* 입사지원서상 자격 사항 입력자 필수제출
- ③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총괄) 2급 이상 인증서 사본 1부
-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사지원서상 경력사항 입력자.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1부
  -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
- ⑤ 대학생 인턴(장기현장실습(IPP) 포함) 및 홍보대사 수료증 사본 1부

- ⑥ 우리 원 공모전 등 수상 상장 사본 1부
- ⑦ 우수 사회복지요원 추천서 사본 1부
- ⑧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⑨ 장애인관련 법률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1부
-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⑪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임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부모의 출신국적 표기
- ⑫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종인 자) 1부

## 9. 실무수습 및 전환자 결정

### ■ 실무수습(집합연수 포함)

- (수습기간) - 종합직 : 4개월 이내 예정  
- 일반직(시간선택제), 업무지원직 : 1개월 이내 예정  
\* 본사 집합연수 기간 포함
- (근로형태) 채용형인턴(기간제근로자)
- (근무지역)

구 분		분 야		근무지역
종합직	일반	모든 분야		대구 본사 및 전국 지사 순환근무
	전문			
일반직	보훈	시간선택제* (서무·회계)	이전지역인재	대구 본사 및 전국 지사 순환근무
			서울근무	서울 지역 근무
			충주근무	충북 충주시 근무
업무지원직	보훈	서무보조	일반	서울·경기 지역 근무
			보훈특별고용	대구 본사 근무

- \*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근무지역 변경 가능
- \* 별첨 한국감정원 본사 및 지사 안내 참조

- (근로시간) - 종합직, 업무지원직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일반직(시간선택제) : 주 5일, 1일 4시간 근무 (13~17시)

- (월급여) 종합직 월 220만원, 일반직(시간선택제) 월 90만원, 업무지원직 월 190만원

\* 실무수습 기간에 한하며, 전환 이후에는 내규에 따름

## ■ 전환자 결정

- (대상) 신입직원(채용형인턴) 최종합격자 중 실무수습 수료자
- (전환결정) 집합연수 및 실무수습 평가 결과(만점의 60% 이상)에 따라 전환 결정
  - \* 종합직·일반직은 정규직으로, 업무지원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전환제외) ① 집합연수 및 실무수습 평가결과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② 신용조회·신원조회 결과 등에 따라 성실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0. 전환 이후 근무조건

### ■ 근무지역

구 분		분 야		근무지역
종합직	일반	모든 분야		대구 본사 및 전국 지사 순환근무
	전문			
일반직	보훈	시간선택제* (서무·회계)	이전지역인재	대구 본사 및 전국 지사 순환근무
			서울근무	서울 지역 근무
			충주근무	충북 충주시 근무
업무지원직	보훈	서무보조	일반	서울·경기 지역 근무
			보훈특별고용	대구 본사 근무

\*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근무지역 변경 가능

\* 별첨 한국감정원 본사 및 지사 안내 참조

- 채용예정직급 : 종합직(5급), 일반직(6급), 업무지원직(나6급)으로 채용

- **근로시간** ① 종합직, 업무지원직 : 주5일, 1일 8시간 근무  
 ② 일반직(시간선택제) : 주5일, 1일 4시간 근무 (13~17시)
- **보수 및 복리후생** : 내규에 따라 지급

\* 일반직 시간선택제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일제 대비 1/2)

## 11. 유의사항

- 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력될 경우 각 전형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②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 사실 및 유효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③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 담당자([k25720@kab.co.kr](mailto:k25720@kab.co.kr))에게 반환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기간 내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수집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됩니다.
- ④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중 1개

- ⑤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신용조회 및 신원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 ⑥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판정보류” 판정을 받은 자는 재검사 실시 후 재검사 결과를 별도 부여되는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⑦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를 우리 원 홈페이지(www.kab.co.kr)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⑧ 전형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채용담당자(☎053-663-8305, k25720@kab.co.kr)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전자우편을 통한 이의신청 시에는 지원분야, 성명, 생일,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를 반드시 기재
- ⑨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해야 하며 개인사정으로 입사유예는 불가능합니다.(입사예정일 미 출근 시 입사포기로 간주)
- ⑩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변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
- ⑪ 채용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12.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관리부 채용담당자(☎053-663-8305, 83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9. 30.**



**권익위 청렴도 최우수(1등급) 기관**

□ 건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4.건설	03.건축	01.건축설계·감리	01.건축설계
			03.건축감리
		03.건축설비설계·시공	01.건축설비설계
			04.건축설비 유지관리
한국감정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li> <li>부동산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li> <li>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및 시장 관리</li> <li>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li> <li>보상수탁사업, 녹색건축인증·검토</li> <li>부동산 정책지원 및 R&amp;D</li> </ul>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설계) 03.건축설계 기획, 07.건축설계 설계 도서작성</li> <li>(건축감리) 01.공사착공관리, 03.설계관리, 06.품질관리, 09.준공관리</li> <li>(건축설비설계) 01.설비설계 계획, 02.설비시스템 검토, 03. 에너지계획 수립, 04.친환경 에너지계획 검토, 05.공기조화설비 설계, 06.열원설비 설계, 09.자동제어시스템 설계, 10.설계검증 시뮬레이션, 11.설계도서 작성</li> <li>(건축설비 유지관리) 01.설비운영종합계획, 02.건축설비 유지관리 에너지관리</li> </ul>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수명주택 인증, 결로방지 성능평가, 지능형건축물 인증 운영 등</li> </ul>		
전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결정</li> </ul>		
일반요건	연령,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전공	무관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설계)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지식, 에너지절약 계획에 대한 기본 지식 등</li> <li>(건축감리)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 설계도면 해독 지식, 공종별 시방기준에 대한 지식 등</li> <li>(건축설비설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 공기조화설비시스템에 대한 지식, 자동 제어시스템에 대한 지식, 에너지에 대한 지식, 에너지회수시스템에 관한 지식 등</li> <li>(건축설비 유지관리) 건축법 및 건축기계설비 기준에 대한 이해, 기계설비 계통에 대한 지식 등</li> </ul>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설계) 계획내용 이해 능력, 설계 설명서 작성기술, 시방서 작성 능력 등</li> <li>(건축감리) 기술습득 및 검토 능력, 인·허가 필요 공종 검토 능력, 자료 작성 및 보관 능력 등</li> <li>(건축설비설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평가능력, 인증제도 적용 및 제안기술, 각 시스템의 분석능력, 각 시스템의 적용능력,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의 적용 기술 등</li> <li>(건축설비 유지관리) 건축기계설비 도면이해 능력, 에너지 손실 취약점 분석 기술 등</li> </ul>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기본개념에 충실히 접근하는 태도 등</li> <li>(건축감리)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태도, 업무관리에 대한 공정성, 치밀한 보고서 작성 태도 등</li> <li>(건축설비설계) 에너지절약을 위한 확실한 태도, 인증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태도 등</li> <li>(건축설비 유지관리) 최근 건물의 에너지 사용 경향 변동에 대한 이해 등</li> </ul>		
필요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관</li> </ul>		
직업기초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li> </ul>		
참고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ww.ncs.go.kr</li> </ul>		

## □ 감정평가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0.영업판매	02.부동산	02.부동산관리	01.주택관리	02.상업용 건물 관리
		03.부동산중개	01.부동산 중개	02.부동산 정보제공
		04.감정평가	01.부동산·동산 감정평가	03.감정평가 가격 정보제공
한국감정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li> <li>○ 부동산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li> <li>○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및 시장 관리</li> <li>○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li> <li>○ 보상수탁사업, 녹색건축인증 검토</li> <li>○ 부동산 정책지원 및 R&amp;D</li> </ul>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관리) 16.주택 관리비운영</li> <li>○ (상업용 건물 관리) 01.상업용건물관리 시장분석</li> <li>○ (부동산중개) 01.부동산 시장 분석, 02. 부동산 자료 수집·제공, 04.부동산 현황 분석</li> <li>○ (부동산 정보제공) 01.부동산정보제공서비스 사업기획, 04.부동산정보 분석, 07.부동산 정보 콘텐츠 제공</li> <li>○ (부동산·동산 감정평가) 03.토지 현장조사, 04.건축물·동산 현장조사, 08.감정평가방법 적용, 11. 감정평가서 검수</li> <li>○ (감정평가 가격 정보제공) 01.감정평가가격정보제공 기획, 05.감정평가가격정보 조사·분석</li> </ul>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가격공시) 단독주택가격 공시, 공동주택가격 공시, 토지가격공시 총괄 업무 등</li> <li>○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타당성 기초조사, 감정평가 표본조사, 감정평가서 검토 등</li> <li>○ (부동산조사·통계)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등</li> <li>○ (부동산정책지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리츠 감독지원 업무, 공동주택 관리정보(K-apt) 운영, 도시재생사업, 보상수탁업무 등</li> <li>○ (부동산 연구) 부동산 산업육성, 부동산 공시제도 연구, 감정평가 연구 등</li> </ul>			
전형방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결정			
일반요건	연령,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전공	무관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이해</li> <li>○ (상업용 건물 관리)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부동산경제이론</li> <li>○ (부동산중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부동산 정보 직접 수집 방법 등</li> <li>○ (부동산 정보제공) 부동산 시장이론, e-부동산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매물정보의 진위성 및 허위여부 검증, 시세정보 정확성 검증 방법, 상권과 입지분석 방법 등</li> <li>○ (부동산·동산 감정평가) 토지의 이용규제, 도로 등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법 등</li> <li>○ (감정평가 가격 정보제공) 가격정보 체계, 가격정보 제공의 범위와 특성, 지역분석과 인근분석 등</li> </ul>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관리) 전산처리능력</li> <li>○ (상업용 건물 관리) 입지상권분석 능력</li> <li>○ (부동산중개) 정책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 분석 능력, 부동산 정보 제공 자료의 작성 기술, 공적 장부상 내용과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 판단 능력 등</li> <li>○ (부동산 정보제공) 사업 아키텍처 구성능력, 시세정보 제공업체 모집 및 관리능력 등</li> <li>○ (부동산·동산 감정평가) 대상물건과 비교사례의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 부동산·동산에 관한 가치이론의 이해 및 분석능력, 감정평가 법령에 대한 이해와 감정평가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li> <li>○ (감정평가 가격 정보제공) 가격정보를 검색·가공할 수 있는 능력, 현장조사 능력 등</li> </ul>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관리) 형평성을 잃지 않는 객관적인 태도</li> <li>○ (상업용 건물 관리) 자료수집 및 활용하려는 노력</li> <li>○ (부동산중개) 정책변화에 대한 관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태도 등</li> <li>○ (부동산 정보제공) 전문분야의 새로운 지식에 대한 학습태도, 정보제공내용에 대한 정성을 유지하려는 태도, 설정된 목적을 수행하려는 의지력 등</li> <li>○ (부동산·동산 감정평가) 전문가로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 학습하려는 노력, 감정평가서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조사태도 등</li> <li>○ (감정평가 가격 정보제공) 관련 법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세 등</li> </ul>			
필요자격	○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19년 감정평가사 2차 시험 합격자 포함)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			

## □ 변호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5.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1.법률	01.법무	NCS 미개발 직무(세분류)로 별도 분석을 통해 내용 도출
<b>한국감정원 주요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li> <li>○ 부동산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li> <li>○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및 시장 관리</li> <li>○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li> <li>○ 보상수탁사업, 녹색건축인증·검토</li> <li>○ 부동산 정책지원 및 R&amp;D</li> </ul>		
<b>능력단위</b>	○ <b>(변호사)</b> 법률 리스크 관리, 소송 수행,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분쟁의 예방 및 사후처리를 통한 경영 지원, 관계법령 및 사규 관리, 계약서 검토		
<b>직무수행내용</b>	○ 정관, 내규의 제정, 개폐, 사전심의 및 관리, 법령 및 내규의 해석, 질의회신,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폐 지원에 관한 사항, 대내외 법적분쟁(소의 제기, 응소, 상소, 취하 및 화해 등), 소송대리인 선임, 법인등기 등		
<b>전형방법</b>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결정		
<b>일반요건</b>	연령, 성별	무관	
<b>교육요건</b>	학력, 전공	무관	
<b>필요지식</b>	○ <b>(변호사)</b> 헌법·행정법·상법·민법·노동법 등 경영활동 자문에 필요한 법률 지식, 판례 및 법이론, 소송 관련 기본지식 등		
<b>필요기술</b>	○ <b>(변호사)</b> 법률정보검색 및 활용능력, 내규 재·개정 등을 위한 법령 해석 및 사례 적용 능력, 법적 쟁점 파악 및 법률적 사고를 통한 해결방안 도출 능력 등		
<b>직무수행태도</b>	○ <b>(변호사)</b> 문제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는 자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자세, 문제 상황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분석하는 자세 등		
<b>필요자격</b>	○ 공고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b>직업기초능력</b>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b>참고사이트</b>	○ www.ncs.go.kr		

## □ 변리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5.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1.법률	02.지식재산관리	01.지식재산관리 03.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b>한국감정원 주요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li> <li>○ 부동산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li> <li>○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및 시장 관리</li> <li>○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li> <li>○ 보상수탁사업, 녹색건축인증·검토</li> <li>○ 부동산 정책지원 및 R&amp;D</li> </ul>		
<b>능력단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식재산관리)</b> 06.지식재산 권리 행사, 07.지식재산 분쟁 방어, 10.지식재산 발굴, 12.지식재산 권리화, 13.지식재산 계약관리, 15.지식재산 유지, 17.지식재산 경영수행</li> <li>○ <b>(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b> 01.지식재산 요구분석, 02.지식재산 환경분석, 03.지식재산 정보검색, 04.지식재산 유효자료 선별, 08.지식재산 개발방향 수립</li> </ul>		
<b>직무수행내용</b>	○ 지식재산권(특허) 발굴 및 원활한 특허 출원·등록을 위한 업무 등 수행		
<b>전형방법</b>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결정		
<b>일반요건</b>	연령, 성별	무관	
<b>교육요건</b>	학력, 전공	무관	
<b>필요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식재산관리)</b> 특허법,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발명 및 선행기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공학지식 등</li> <li>○ <b>(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b> 지식재산 정보분석 과업 종류·역할·전문용어, 지식재산 정보분석 절차 및 도구, 최근 기술동향 등</li> </ul>		
<b>필요기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식재산관리)</b> 특허 분석 기술, 기술 분석 능력, 시장 조사 기술, 선행기술 검색 능력, 권리 확보 가능성 분석 능력, 출원 및 등록 전략 관련 서류 작성 능력 등</li> <li>○ <b>(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b> 정보분석 과업 해석능력, 과업지시 구체화 능력, 조사방법 작성능력, 예산산출 및 조정능력, 타 전문가들과의 소통능력, 핵심기술 분석·정리 능력, 자사 기술 분석 보고서 작성능력 등</li> </ul>		
<b>직무수행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식재산관리)</b> 법률적 사고, 지식재산과 경영의 상호 관련성 수용,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려는 의지,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태도, 자료의 세밀한 분석 자세, 발명의 비밀유지를 위한 보안 준수, 발명을 보호하려는 의지 등</li> <li>○ <b>(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b> 과업 지시자 의견수렴을 위한 긍정적 태도,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한 논리적 사고,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전략적 사고, 기술이해를 위한 학구적 태도, 기술분석의 정확성을 위한 세심한 업무처리 태도 등</li> </ul>		
<b>필요자격</b>	○ 공고일 기준 「변리사법」 제3조에 따라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b>직업기초능력</b>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b>참고사이트</b>	○ www.ncs.go.kr		

## □ 공인노무사(이전지역인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경영·회계·사무	02.총무·인사	02.인사·조직	02.노무관리
<b>한국감정원 주요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li> <li>○ 부동산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li> <li>○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및 시장 관리</li> <li>○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li> <li>○ 보상수탁사업, 녹색건축인증·검토</li> <li>○ 부동산 정책지원 및 R&amp;D</li> </ul>		
<b>능력단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노무관리)</b> 01.노사관계 계획, 02.노사관계 교육훈련, 04.단체교섭, 05.단체협약이행, 06.노동쟁의 대응, 07.노사협의회 운영, 09.노사관계 개선, 10.노사관계 평가</li> </ul>		
<b>직무수행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관계 법령의 개정</li> <li>○ 노사관련 전략 수립 및 이행</li> <li>○ 단체교섭 수행 및 대응</li> <li>○ 노동쟁의 대응(대책수립 및 관계개선)</li> <li>○ 노사관계 개선 및 평가(노동법 준수, 직원고충 처리, 평가방안 수립 및 이행)</li> <li>○ 고용관련 대정부 요구자료 작성 및 대응</li> <li>○ 기타 각종 노무이슈에 관한 자문 등</li> </ul>		
<b>전형방법</b>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결정		
<b>일반요건</b>	연령, 성별	무관	
<b>교육요건</b>	학력, 전공	무관	
<b>필요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노무관리)</b>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교섭의 일반원칙,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환경 분석, 관련 판례 및 사례연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회의운영기법, 노사관계 발전계획 분석 및 평가, 헌법·행정법·상법·민법·노동법 등 경영활동 자문에 필요한 법률 지식, 소송 관련 기본지식 등</li> </ul>		
<b>필요기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노무관리)</b> 의사소통 기술, 협상 기술, 조직화 및 계획 능력, 분석 및 종합 능력, 문서 작성 기술, 법률 해석 기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컨설팅 기술, 근로계약서 작성 기술, 상담 기술, 인터뷰 진행 기술 등</li> </ul>		
<b>직무수행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노무관리)</b> 전략적 사고, 적극적 경청 및 여러 부서와 협업하려는 자세,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수용 자세, 합의사항에 대한 존중, 상대를 배려하는 포용력, 신뢰 형성, 원칙 준수, 위기에 대처하는 유연성 등</li> </ul>		
<b>필요자격</b>	○ 공고일 기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		
<b>직업기초능력</b>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b>참고사이트</b>	○ www.ncs.go.kr		

□ 일반직(시간선택제(사무·회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경영·회계·사무	02.총무·인사	01. 총무	01. 총무
		03. 일반사무	02. 사무행정
한국감정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li> <li>부동산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li> <li>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및 시장 관리</li> <li>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li> <li>보상수탁사업, 녹색건축인증·검토</li> <li>부동산 정책지원 및 R&amp;D</li> </ul>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 행사지원관리, 비품관리, 업무지원, 총무문서관리, 복리후생지원</li> <li>(사무행정) 문서작성, 문서관리, 사무행정 회계처리, 회의 운영·지원, 사무행정 업무관리</li> </ul>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 및 복지지원, 대·내외적인 회사의 품격 유지를 위한 제반업무</li> <li>(사무행정)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영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li> </ul>		
전형방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결정		
일반요건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함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연령,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전공	무관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 행사 운영, 사후관리, 비품 구매 실무, 자산관리, 증명서 종류 및 발급절차, 사무공간 배치 방법, 우편의 종류, 인쇄물 제작, 복리후생 규정과 운영계획 수립, 제도 운영, 복리후생 시설관리 등</li> <li>(사무행정) 부서(팀)의 업무분장 내용, 문서기안 절차 및 양식, 체계, 문서규정, 문서대장 관리, 기본회계지식, 회계규정, 여비규정, 운영방법, 안내방법, 회의 운영 방법, 업무분장 내용, 업무용 소프트웨어 특성, 사무기기운영 매뉴얼, 기초통계지식 등</li> </ul>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 행사진행 기술, 전산시스템 활용, 장부정리능력, 개정사유 파악능력, 공사비용 건적 분석능력, 문서분류 기술, 문서작성 기술, 우편물 분류기술, 정보검색능력, 기획력, 분석력, 문제해결능력 등</li> <li>(사무행정) 문서작성 및 기안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문서분류능력, 문서관리능력, 회계시스템 사용능력, 회의운영 및 관리능력, 보고능력, 사무기기 활용능력, 업무 전달능력, 사무물품 재물조사 및 구매기안 능력,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등</li> </ul>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 종합적 사고 자세, 타부서와 협업자세, 정확성, 공평한 원칙준수, 신속한 업무 처리, 내부고객에 대한 서비스태도,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서비스 정신, 개선의지,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태도</li> <li>(사무행정) 경청하는 태도, 일정계획 준수, 성실성, 주의 깊은 관찰력, 업무협조 자세, 업무처리규정 및 지침 준수, 정확한 업무처리 태도, 적극적 정보수용 의지, 구성원 지원의지, 문제해결 의지, 철저한 관리태도</li> </ul>		
필요자격	○ 무관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		

## □ 업무지원직(사무보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경영·회계·사무	02.총무·인사	01. 총무	01. 총무
		03. 일반사무	02. 사무행정
한국감정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li> <li>부동산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li> <li>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및 시장 관리</li> <li>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li> <li>보상수탁사업, 녹색건축인증·검토</li> <li>부동산 정책지원 및 R&amp;D</li> </ul>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 행사지원관리, 비품관리, 업무지원, 총무문서관리, 복리후생지원</li> <li>(사무행정) 문서작성, 문서관리, 사무행정 회계처리, 회의 운영·지원, 사무행정 업무관리</li> </ul>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 및 복지지원, 대·내외적인 회사의 품격 유지를 위한 제반업무</li> <li>(사무행정)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li> </ul>		
전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결정</li> </ul>		
일반요건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함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연령,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전공	무관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 행사 운영, 사후관리, 비품 구매 실무, 자산관리, 증명서 종류 및 발급절차, 사무공간 배치 방법, 우편의 종류, 인쇄물 제작, 복리후생 규정과 운영계획 수립, 제도 운영, 복리후생 시설관리 등</li> <li>(사무행정) 부서(팀)의 업무분장 내용, 문서기안 절차 및 양식, 체계, 문서규정, 문서대장 관리, 기본회계지식, 회계규정, 예비규정, 운영방법, 안내방법, 회의 운영 방법, 업무분장내용, 업무용 소프트웨어 특성, 사무기기운용 매뉴얼, 기초통계지식 등</li> </ul>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 행사진행 기술, 전산시스템 활용, 장부정리능력, 개정사유 파악능력, 공사비용 견적 분석능력, 문서분류 기술, 문서작성 기술, 우편물 분류기술, 정보검색능력, 기획력, 분석력, 문제해결능력 등</li> <li>(사무행정) 문서작성 및 기안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문서분류능력, 문서관리능력, 회계시스템 사용능력, 회의운영 및 관리능력, 보고능력, 사무기기 활용능력, 업무전달능력, 사무물품 재물조사 및 구매기안 능력,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등</li> </ul>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 종합적 사고 자세, 타부서와 협업자세, 정확성, 공평한 원칙준수, 신속한 업무처리, 내부고객에 대한 서비스태도,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서비스 정신, 개선의지,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태도</li> <li>(사무행정) 경청하는 태도, 일정계획 준수, 성실성, 주의 깊은 관찰력, 업무협조 자세, 업무처리규정 및 지침 준수, 정확한 업무처리 태도, 적극적 정보수용 의지, 구성원 지원의지, 문제해결 의지, 철저한 관리태도</li> </ul>		
필요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관</li> </ul>		
직업기초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li> </ul>		
참고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ww.ncs.go.kr</li> </ul>		

## I 이전지역인재(대구·경북)

### ■ 범 위

- 본사 이전지역(대구·경북)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원 제외) 졸업(예정)자.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 대학 졸업예정자의 범위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 대구·경북 소재 지방대학의 범위(예시)

가. 대구·경북 소재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본교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에 해당되지 않는 캠퍼스는 본교 소재지에 따름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나. 대구·경북 소재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 1) 본교가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 그 외의 이전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이전지역인 경우
-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이전지역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이전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이전지역인 경우

✓ 2개 대학 이상 재학 중인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 ① 이전지역 소재대학과 그 외 지역 소재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대학 졸업 후 그 외 지역 소재대학 졸업 : 이전지역인재 해당
  - 이전지역 외 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소재대학 졸업 : 이전 지역인재 해당

- ②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그 외 지역 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이전지역인재 해당
  - 이전지역 외 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이전지역인재 비해당

- ③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소재대학 중퇴 후 다시 그 외 지역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이전지역인재 비해당
  - 이전지역 외 소재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이전지역인재 비해당

\* 단, 이전지역 소재대학 졸업 후에는 이전지역인재에 해당

- ④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대학 졸업 후 그 외 지역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이전지역인재 해당
  - 이전지역 외 소재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소재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이전지역인재 비해당

## ※ 예 시

✓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에 3학년 재학·휴학 중인 자 : 이전지역 지역인재 아님

- ✓ 대구·경북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소재 대학교에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이전지역 지역인재 아님
- ✓ 대구·경북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에 3학년 재학·휴학 중인 자 : 이전지역 지역인재

## II 비수도권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제외)

###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통합공시 기준을 따름

### ■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범위(예시)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 (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 그 외의 비수도권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 2개 대학 이상 재학 중인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 ① 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 졸업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 졸업(예정)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 ②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 ③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지방대학 중퇴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 서울소재대학 중퇴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 ④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 ※ 예 시

- ✓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소재 대학교 1학년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아님
- ✓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청소재 대학교에서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 충청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비수도권 지역인재 아님

□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별첨4**

**한국감정원 본사 및 지사 안내**



구분	소재지	구분	소재지	
<b>본 사</b>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b>청주지사</b>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34	
<b>수도권 본부</b>	<b>서울강남지사</b>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b>충주지사</b>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
	<b>서울중부지사</b>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b>광주지사</b>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b>서울동부지사</b>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b>순천지사</b>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296
	<b>서울남부지사</b>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61	<b>전주지사</b>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b>경기남부지사</b>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b>군산지사</b>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5
	<b>경기동부지사</b>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6	<b>제주지사</b>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
	<b>경기중부지사</b>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b>부산동부지사</b>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
	<b>인천지사</b>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b>부산서부지사</b>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81번길 10
	<b>경기북부지사</b>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58	<b>울산지사</b>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b>경기서부지사</b>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b>창원지사</b>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b>춘천지사</b>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b>진주지사</b>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4
	<b>강릉지사</b>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87	<b>대구지사</b>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b>대전지사</b>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b>안동지사</b>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b>천안지사</b>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38	<b>포항지사</b>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b>홍성지사</b>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